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10. 11(목) / 총 2매(본문 2매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• 과장 황운언, 사무관 강치득, 주무관 임태진 • ☎ (044) 201-3351, 3343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청약당첨 1주택자, 6개월내 집 안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’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,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하고,
 - 당첨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자격·공급순위 등을 위반한 경우(주택법제54조제2항 위반)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- 다만,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공급질서교란 행위로 볼 수 있으며, 이는 주택법령에 따라 3,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(법 제101조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처분 또는 수사의뢰·고발 여부는 지자체장(주택사업승인권자)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며, 고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수위가 확정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머니투데이 · 중앙일보 등, 10.11) >

- ◆ 청약당첨 1주택자,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,000만원 벌금
- ◆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 6개월내 기존 집 안팔면 최고 징역 3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
기금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